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8.12.26.(수) 09:32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70차 및 제7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7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 제7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의결안건 '가'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외의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7]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18-73-600) (비공개)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8-73-601)

- 2018년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하기 위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심사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4년,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되,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취자 권익보호, 난청 해소 등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결함

다.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2018-73-602)

- 2018년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수도권 제외), 부산 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주)대전 방송 등 7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하기 위해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심사 결과, 7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되,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상파DMB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 음영 지역 해소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기로 의결함

8] 보고사항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관한 사항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견서 주요내용

-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

나.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시민미디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제고 등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 * 향후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 홍보 강화, 백서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규제체계의 차별해소를 위해 추진한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하고, 동 ‘제도개선(안)’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기로 함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방송법(70조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배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16~'18년에 걸쳐 실시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 동 기본 계획(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안)'의 의결을 거쳐 '19~'21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적용할 예정

※ 주요내용

- 재허가·재승인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 부가조건 종류,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

<심사점수별 차등화 방안>

심사점수	유형	유효기간	조건 부가	이행점검 주기
700점 이상	재허가/재승인	5년	①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이행 관련 조건 부가	2년
650점-700점 미만		4년		1년
650점 미만	조건부 재허가/재승인 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	3년	①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 이행 관련 조건 부가 ②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방통위가 추가 가능	6개월

* 단,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항목 과락(배점의 50%미만)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방통위가 추가 가능

- '심사사항'의 과락점수를 배점의 40%미만에서 50%미만으로 강화하고,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편·보도PP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이 가능
- '심사항목'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을,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 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외주 상생 관련 항목을 명시하는 등 일부항목을 개선

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회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제안서 논의결과를 원안대로 접수하고, 동 정책제안서를 대국민 공개 및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책제안서 주요내용

-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등

바. 흡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 가이드라인 제정안 주요내용

· ▲방송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수수료 강요 금지 ▲제작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사전제작영상물 제작비용 ▲상생협력협의회 구성·운영 등

9)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기로 함

6. 폐 회 (15:59)